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기존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확정된 행정구역 경계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신지번에 맞게 정리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조 정 규 모

- 광천동에서 유덕동으로 편입 : 57필지 56,449m²
- 화정1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 : 17필지 68,623m²
- 화정1동에서 농성1동으로 편입 : 216필지 88,538m²
- 유덕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 : 313필지 52,435m²
- 서창동에서 화정4동으로 편입 : 3필지 734m²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면 자연적·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확정해야 하고,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민주성의 요구를 또한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런데 이러한 행정구역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와는 변화된 구역획정기준에 맞추어 또한 그 개편이 필요하게 되는 것도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 계속적인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라 국토의 자연적·지리적 조건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권이 크게 변화하였고, 교통통신의 발달 및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권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 등 여러 면에서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구역을 적절하게 조정한다는 원칙 하에,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의견요청과 법정 승인 등 관련 사전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